

의안번호	제 1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7월 일 (제 292 회)

**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
폐지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7월 2일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

의 번 호	1
-------------	---

제출연월일 : 2010. 7. 2.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어,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,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,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함.

가.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폐지(부칙 제2조)

- 1)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
- 2)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- 3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
- 4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- 5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
- 6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

나.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일부개정(부칙 제3조)

- 1)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- 2)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- 3)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
- 4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- 5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
- 6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
에관한조례
- 7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
례
- 8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
- 9)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
- 10)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11)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- 12)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
- 13)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
3. 참고사항

관계법령 : 별첨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.

- 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- 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- ③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- 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- ⑤ 충청북도교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한다.
- ⑥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일부개정한다.

- 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"을 "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위원"을 "교육의원"으로 "충청북도교육위원회"를 "충청북도의회"로 각각 한다.

제3조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"을 "충청북도의회 교육의원"

"으로, "교육위원"을 "교육의원"으로 각각 한다.

②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"를 "충청북도의회"로 한다.

제9조 중 "교육위원회"를 "충청북도의회"로 한다.

③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"을 "충청북도교육청"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"을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"으로 한다.

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기관"을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"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⑦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

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2조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"을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"으로 한다.

⑧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"을 "충청북도교육감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·충청북도교육청"을 "충청북도교육청"으로 한다.

⑨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"을 "충청북도교육감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"을 "충청북도교육감"으로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를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로 각각 한다.

⑩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"를 "충청북도의회"로 한다.

⑪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"을 "보조기관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교육위원회"를 "충청북도의회"로 각각 한다.

⑫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"을 "보조기관"으로 한다.

⑬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"을 "충청북도교육청"으로 한다.

제27조 중 "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"를 "충청북도교육청"으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호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"을 "충청북도교육청"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"을 "충청북도교육감"으로 한다.

제39조의1제1호 중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"을 "충청북도교육청"으로 한다.

관계법령

[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]

제4조 (교육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부칙 <제8069호, 2006.12.20>

제2조 (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)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,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에 따라 시·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·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.